[別表의2] <改正 1963·6·8>

商業地域內에 建築할 수 없는 建築物

(1) 當時 使用하는 原動機의 馬力數의 合計가 15馬力以上의 工場(日刊新聞의 印刷所를 除外한다)

(2)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사업을 經營하는 工場

1. 玩具用普通火工品의 製造
2. 아세찌렝까스를 使用하는 金屬의 工作(아세찌렝까스의 發生器의 容積이 30릿터以下의 것 또는 溶解 아세찌렝까스를 使用하는 것을 除外한다)
3. 引火性溶劑를 使用하는 드라이크리닝 또는 드라이다이닝
4. 세루로이드의 加熱, 加工 또는 機械톱을 使用하는 加工
5. 印刷用잉크 또는 그림색감의 製造
6. 馬力數의 合計가 0.25馬力以上의 原動機를 使用하는 塗料의 뿜질
7. 亞黃酸까스를 使用하는 物品의 漂白
8. 骨炭 其他 動物質炭의 製造
9. 羽毛類의 洗滌, 染色 또는 漂白
10. 넝마, 부스럭솜, 휴지, 헌실 其他 이와 類似한 것의 消毒, 選別, 洗滌또는 漂白
11. 製材·製綿, 古綿의 再製, 起毛, 反毛 또는 벨트의 製造로서 原動機를 使用하는 것
12. 뼈, 뿔類의 쪼갬 또는 乾燥硏磨機를 使用하는 것
13. 鑛物, 岩石, 土砂, 硫黃, 金屬, 유리, 벽돌, 陶磁器, 뼈 또는 조개껍질의 粉碎로서 原動機를 使用하는 것
14. 먹, 懷爐灰 또는 煉炭의 製造
15. 活字 또는 金屬工藝品의 鑄造(印刷所에서의 活字의 鑄造를 除外한다)
16. 기와, 벽돌, 土器, 陶磁器, 人造숫돌, 독 또는 琺瑯, 鐵器의 製造
17. 유리의 製造 또는 砂吹
18. 動力鎚를 使用하는 金屬의 鍛造

(3) 其他 閣令의 定하는 事業을 經營하는 工場 또는 火藥類의 貯藏 또는 處理의 用에 供하는 建築物